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변창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의 임차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73호, 2021. 1. 5. 공포, 2021. 4. 6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,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제기구 유치지원 확대(안 제29조의2)

국제기구 유치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, 임차료·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.

나. 공동캠퍼스 내 입주가능 시설 추가(안 제29조의4)

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전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
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
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축”을 “건축(국제기구의 경우 임차
및 운영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4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
연구기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의2(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) 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<u>건축</u>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29조의2(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건축(국제기구의 경우 임차 및 운영을 포함한다)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4(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) 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.	제29조의4(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7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<u>부설연구기관</u>
7. (생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	
연락처	(044) 201-3686